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67
----------	------

2017년 8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의결 (원안 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 개요

- 본 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와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여성시설의 기능을 조례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등 신규 여성시설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 체계를 알기 쉽게 구분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정안 조항	내용
① 상위법 근거규정 변경사항 반영	제1조, 제10조, 제19조	「여성발전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근거법령 00
② 여성관련시설 목적, 기능 명확화 등	제4조	각 시설별 목적 명확화 및 일반조항 신설(6호)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여성각 시설별 기능이 시행규칙과 조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일관되게 조례규정으로 정비
	제5조(별표1), 제7조(별표3), 제8조(별표4), 제9조(별표5)	시설 주소 현행화

③ 신규 여성시설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제4조, 제6조, 제18조, 별표2, 별표7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근거 규정 신설 및 명칭, 위치, 이용료부과기준 신설
	제9조 (별표5)	강동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근거 규정 신설
④ 여성시설 사용 및 이용 개념 명확화	제3장(제14조~16조) 제4장(제17~21조) 제18조(별표6, 별표8)	사용과 이용 개념 명확화 및 조항 정비
⑤ 시설이용 우선적용 및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제17조, 제19조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

2. 조항별 검토의견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변경 (안 제1조, 제10조, 제19조 관련)

- 안 제1조 및 제10조, 제19조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상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인용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 법에 따른 조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이는 지난 2015년 7월에 전부개정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의 개정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2) 여성관련시설 기능 명확화 및 신규 시설 제도화(안 제2장; 안 제5조~안 제9조 관련)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입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는데, 두들어진 특징으로, 현행 조례는 제2장에서 제5장까지¹⁾ 각각의 여성시설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제2장 여성관련시설’로 통합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나열된 조항들을 정비함.
-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각 시설별로 그 기능이 어떤 시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또 어떤 시설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그 명기가 일관되지 못해왔던바,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는 기능을 조례규정으로 상향조정하여 일관성을 갖추도록 그 입법체계를 정비하려고 한 것인바, 이상의 조치는 바람직해 보임.
- 다만, 개정안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에서는 마지막 각 호에 특정하지 않는 기능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신설하였으나,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1) 현행조례는 ‘제2장 여성플라자’,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 ‘제4장 여성발전센터’,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로 구분됨.

등)와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기능 등)에서는 동일한 각 호가 존재하지 않아, 시설별·조항별 통일성이 다소 떨어짐.

- 또한, 서울시에서는 개정안을 통해 여성발전센터(안 제8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안 제9조)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차별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상 이들 기관간 차별적 기능이 차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서울시에서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각 일자리기관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개정안의 각 시설별 기능>

<p>안 제5조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p>	<p>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공간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기타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p>안 제6조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p>	<p>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 2.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 3.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 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5.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p>안 제7조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p>	<p>②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조정·평가 및 지원 3. 여성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창업 촉진 사업 추진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능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p>안 제8조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p>	<p>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p>안 제9조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기능 등)</p>	<p>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 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덧붙여,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을 상당부분 조례로 상향조정하고 있는바, 향후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규칙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신규 여성시설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안 제4조, 제6조, 제9조 별표2·7, 별표5)

- 안 제4조 및 제6조(별표2 포함), 제18조(별표 7포함)는 지난 '17년 5월에 개관한 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규 여성시설 근거규정 관련 조항>

안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행과 같음)(생략)
2. 여성공예센터 :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3~ 5. (현행의 2~4와 같음) (생략)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안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과 같다.

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
2.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
3.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
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5.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별표 2] 서울여성공예센터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별표 7] 서울여성공예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창업실	보증금	1실당 1,000,000원~ 2,000,000원	이용료 별도
	이용료	<i>m</i> 당/1개월 5,000원~ 15,000원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 사용자 개별부담

- 여성공예센터는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위탁받아 총 14명의 인력으로 여성공예인 창업지원 등을 위해 연간 21억원(2017년 기준)의 예산규모로 운영 중이며, 총 52개의 입주기관이 입주해 활동하고 있음(별첨자료: 여성공예센터 운영현황 참조).
- 개정안은 상기 여성공예센터 외에도 지난 '17년 7월 설치된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상 명시(별표 5)함.
- 본 개정안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하듯이, 신규 설치된 여성관련시설을 명문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시 관할 여성시설로서의 위상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제도적 근거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4) 여성시설 사용 및 이용 개념 구분 명확화 (안 제3장, 안 4장, 별표6, 별표8)

○ 개정안은 제3장(사용허가)과 제4장(시설이용)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구성함.

- 이는 현행 조례상 여성관련시설에 대한 사용허가(현행 제7조~제9조, 제16조 관련)와 이용료(현행 제14~15조, 제21~23조) 관련 조항이 사용과 이용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어, 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각각의 장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것임.

○ ‘사용’ 과 ‘이용’ 에 대한 개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²⁾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받은 자를 ‘사용허가 받은 자’ 로 본다고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받은 자가 ‘이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규정을 ‘제3장 사용허가’ 의 장으로 구분하고, 시설이용 및 요금부과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③(생략)

④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생략)

⑥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을 ‘제4장 시설이용’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용과 이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법조문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시설이용 우선적용 및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안 제17조, 안 제19조)

- 개정안은 여성시설 이용 우선대상자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를 포함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 이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등 궁극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의 취지는 그 긍정성이 있다고 보여짐.

3. 종합의견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와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각 여성시설의 기능을 조례로 상향조정하며, 신규 여성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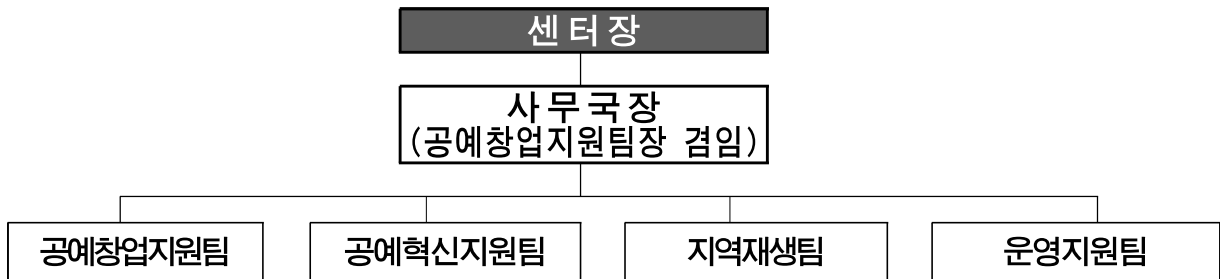
여성공예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운영현황)

- 위 치 :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공릉동 622, 舊 북부지청)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5,723㎡)
- 위탁 현황

수탁자	위탁기간	정원	비고
(사)일상예술창작센터 대표 최현정	'17.2.1.~ '18.12.31.(2년)	14명	센터장 1, 팀장 4, 팀원 9

○ 조직



○ 사업내용

-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 창업공간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입주자 네트워크 운영, 판로개척 및 홍보, IT기반 기술지원 등
-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예마켓 운영 등

○ 소요예산 : 2,10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17.7월말기준)	집행률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2,105	1,519	72.0%

○ **창업실 입주기간 및 입주비용**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운영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가능)
- 보증금/월납금 : 1,000,000원 / m²당 5,000원
- 사용부담금(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 : 입주자 부담

□ **안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제2항 각호
기능별 현재 지원 현황**

각호	지원 내용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개 창업실 공간 지원 ◦ 비주얼 스튜디오, 코워킹 스페이스(회의실), 컴퓨터/프린터, 휴게공간 이용 ◦ 공예 체험장 내 장비/도구 등 사용
입주 공예인의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프로그램 : BMC 워크샵, 세무회계, 저작권, 홍보/마케팅, 브랜딩, 사진 및 콘텐츠 제작 교육 ◦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펀딩 설명회(텀블벅, 오마이컴퍼니 등), 공동 기획전 운영 ◦ 입주공예인들간의 협업 및 네트워크 강화 : 소모임, 학습 지원 ◦ 판로확대 : 공동으로 박람회 참여, 전시·박람회 참여 지원 ◦ 자문위원회 구성 : 공예/창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예분야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예분야 생활창작프로그램 운영 ◦ 공예마켓 ◦ 투어프로그램 운영 : 관련분야 대학생, 예비공예가, 학교 등 ◦ (예비)공예창업가를 위한 특강 : 공예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특강 운영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설명회 및 지역 커뮤니티 참여 : 지역단체모임, 창업기관 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 ◦ 지역 주체들과의 협업 : 연합장터 기획(지역에서 장터를 열고 있는 주체들과의 협력, 단지 연합 장터 기획), 청소년 단체와 협력(진로체험학습으로 입주기업과 청소년 연계, 인턴 프로그램 참여), 여성보육센터와 협력(창업보육매니저 현장 실습 기관으로 참여 등)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7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5.7.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여성관련시설 근거규정 변동함(안 제1조, 제10조, 제19조)
- 나. 여성관련시설 사용 및 이용의 개념 구분하여 신규 장을 편성하고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함 (안 제3장, 제4장)
- 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함(안 제6조, 별표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제47조
 - 나. 예산조치 : 연 2,550,841천원
 - (1)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 308,841천원(인건비 및 사업비)
 - (2) 서울여성공예센터 : 2,242,000천원(인건비 및 사업비)
- ※ 시설 설치 후 운영비 교부를 위한 예산(민간위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의견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에 해당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7.06.1~06.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고준영(☎ 2133 - 5029)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제47조”로, “서울특별시의”를 “서울특별시가”로, “운영하는데”를 “운영함에”로,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분)”을 “(여성관련시설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플라자:”를 “여성플라자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 등”으로, “복지증진 등을 위한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을 “복지증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공예센터 :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4조제4호 중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발전센터 :”로, “교육·취업·창업지원”을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장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제3장제14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 공간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기타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3조(중전의 제5조)의 제목 “(이용대상)”을 “(이용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여성플라자”를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여성관련시설”을 삽입한다.

제6조의 제목 “(여성플라자의 명칭 등)”을 “(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를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로,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
2.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
3.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
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5.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제14조(중전의 제7조)제1항 전단 중 “여성플라자를”을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로, “이 장에서 “사용자””를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플라자의”를 “제1항에 따른 여성관련시설의”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사용허가”로, “여성플라자의”를 “여성관련시설의”로, “줄”을 “정할”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16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사용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을 “여성관련 시설 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플라자”를 “여성관련시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
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사업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10조 앞에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사용허가”를 삽입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 :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여성공예센터 :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발전센터 :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의 직접적인 소요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중전의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8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을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 제7조(중전의 제11조)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각 호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여성발전센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시설이용”을 삽입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20조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이하 이 장에서 “이용자”라 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제20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을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발전센터”를 “여성관련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교육이용조건”을 “이용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발전센터”를 “여성관련시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여성관련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11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사용료”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3조)의 제목 “(사용료의 반환)”을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한다.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등)”을 “(이용료의 감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18조제1항제1호”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사용허가를 받은”을 “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중 “사용료의”를 각각 “이용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제19조(중전의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사용료의”를 “이용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제2호”를 “제18조제1항제3호”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사용료”를 “이용료”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4조제2항 제1호”를 “제17조제2항제1호”로, “50”을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중전의 제27조) 중 “제3호”를 “제6호”로 한다.

제26조(중전의 제28조)제1항 중 “제17조 및 제27조”를 “제10조 및 제25조”로,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9조)제2항 중 “발급결정”을 “교부결정”으로, “뺄을”을 “할”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30조) 중 “이”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제5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여성플라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별표2를 별표3으로 하고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서울여성공예센터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 아리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별표3를 별표4으로 하고 별표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여성능력개발원 명칭 및 위치(제7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별표4를 별표5으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길 23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7

별표5를 별표6으로 하고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1길 23(명륜4가)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39-21(신계동)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2길 20(상봉동)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0-1(용두동)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08(미아동)
	2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61(수유동)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87(공릉동)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50(불광동)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대현동)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34(화곡동)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63(구로동)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61(영등포동6가)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9(사당동)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5(봉천동)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서초동)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34(가락동)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54(도선동)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0(둔촌동) 신성빌딩 4층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1길 34(등촌동), 투에프코트 빌딩 7층

별표6을 별표7으로 하고 별표6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

여성플라자의 시설이용료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1호 관련)

1. 기본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국제회의장 (전체)	360,000원 ~ 500,000원	1. 1회 단가로서, 1회란 오전(10:00~14:00), 오후 (14:00~18:00), 야간(18:00~22:00) 중의 하나임 2.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공휴일의 공연 및 행 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1. 시간당 단가이며, 회의실의 경우 전실을 사용할 경우 에는 시간당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2.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3.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의 공연 및 행사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아트홀	280,000원 ~ 400,000원	
회의실	5,000원 ~ 50,000원	
세미나실	10,000원 ~ 30,000원	
시청각실	20,000원 ~ 40,000원	
강의실	5,000원 ~ 30,000원	

※ 시설별 부속시설 이용료는 원가수준과 다른 기관의 시설이용료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

2. 체육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시설이용	금 액	
수 영	1개월	40,000원 ~ 80,000원	
헬 스	1개월	40,000원 ~ 80,000원	
에어로빅	1개월	40,000원 ~ 60,000원	

3. 숙박(연수)시설 이용료

구 분	기준금액	비 고
한실	40,000원 ~ 220,000원	1. 실별 정원에 따라 사용료 책정 2. 한실의 경우 정원에서 1명 추가될 때 마다 10,000원씩 추가
양실	40,000원 ~ 230,000원	

별표7을 별표6으로 하고 별표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서울여성공예센터 이용료 부과기준(제18조 제1항 제2호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창업실	보증금	1실당	1,000,000원~ 2,000,000원	이용료 별도
	이용료	m ² 당/1개월	5,000원~ 15,000원	전기, 상하수도, 전화 등 사용자 개별부담

별표8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부과기준 (제18조 제1항 제3호 관련)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부 과 기 준
직업교육	1명 1개월	15,000원~ 100,000원	시장이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해당과정의 총 수강 료 수입이 해당 과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직업교육: 100,000원 2. 생활문화: 50,000원
생활문화	1명 1개월	15,000원~ 50,000원	
보육실 이용료	1명 1개월	5,000원~ 10,000원	○ 교육수강시간에 한정함
수영장	수강료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자유이용료	1명 1회 2,500원~ 3,000원	
헬 스	1명 1개월	40,000원~ 80,000원	

에어로빅 (요가)	1명 1개월	40,000원~ 60,000원		
강 당	1시간	1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교육실 및 회의실	1시간	5,000원~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 ○ 1시간 이내 초과 시는 다음시간 이용료까지 가산함 ○ 토, 일, 공휴일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원~ 30,000원		
시청각실	1시간	20,000원~ 40,000원		
창업보육 지원시설	창업보육실	m ² 당/1개월	1,000원~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1,000,000원 별도 ○ 관리비 별도
	창업부스	부스당/ 1개월	1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금 500,000원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성발전기본법</u>」 제33조 및 「<u>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u>」 제28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여성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으로써 여성의 <u>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u>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서울특별시의 여성관련시설(이하 “여성관련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u></p> <p>제3조(<u>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원칙</u>) (생략)</p> <p>제4조(<u>구분</u>)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u>여성플라자</u>: 여성의 권익향상 및 <u>복지증진 등을 위한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u>을 목적으</p>	<p>제1조(목적) ----- 「<u>양성평등기본법</u>」 제45조, 제47조 -----</p> <p>-----</p> <p>- <u>서울특별시가</u> -----</p> <p>----- <u>운영함에</u> -----</p> <p>----- <u>사회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성평등에 기여함</u>-----.</p> <p>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u>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u>-----</p> <p>-----</p> <p>-----</p> <p>-----</p> <p>-----.</p> <p>제3조(<u>기본원칙</u>) (현행과 같음)</p> <p>제4조(<u>여성관련시설의 종류</u>) -----</p> <p>-----</p> <p>-----.</p> <p>1. <u>여성플라자</u>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 등 -</p>

로 하는 시설

2.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총괄 교육계획 수립·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조정·평가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발전센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신 설>

<신 설>

- 복지증진 -

2. 여성공예센터 : 여성공예인의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여성능력개발원 : 여성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조정·지원 등의 총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여성발전센터 : -----
----- 교육, 취업·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
-

5.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취업·창업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5조(이용대상)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성활동 공간 지원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교육 공간 지원
3. 여성창업 및 경제능력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지원
4. 여성친화적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시·공연 등 공간 지원
5. 여성 정보화 향상 등 기타 여성 친화적 공간 지원
6. 그 밖에 여성가족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3조(이용자격) -----

--.

1. 시-----

2.·3. (생략)

제2장 여성플라자

<신설>

제6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여성플라자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기능,

2.·3. (현행과 같음)

<삭제>

제2장 여성관련시설

제6조(여성공예센터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공예센터-- 별표 2-----.

② 여성공예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여성공예 창업공간 지원
2.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성장)지원사업 추진
3. 공예분야 생활 창작 및 시민 참여활성화사업 추진
4.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5.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추진

제1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이 설치한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 “사용자” -----

-.

② ----- 제1항에 따른 여성관

사용자의 사용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
여야 하며, 여성플라자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을
줄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
플라자의 사용허가를 취소·정
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
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여성플라자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신 설>

련시설의 -----

사용허가-----
여성관련시설의 -----

----- 정할 ----.

제8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기
능 등)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과 같다.

②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
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

<신 설>

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
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및 고용유
지사업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
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
사업

4.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
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
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
계사업 운영 등

제9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여성
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하
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
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3.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

제9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여성플라자의 사용 이후에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플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여성능력개발원

<신 설>

제10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여성능력개발원의 기능) <신 설>

공·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 사업

4.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진로설계,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지원사업

5. 기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제16조(원상회복 등) ① 여성관련 시설 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된 -

-----.

② ----- 여성관련시설-----

-----.

<삭 제>

제3장 사용허가

<삭 제>

제7조(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능력개발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와 같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12조(시범사업) 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창업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센터

<신설>

제13조(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등) 제4조제3호에 따른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교육이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현행 제4호와 같음)

<삭제>

<삭제>

제4장 시설이용

<삭제>

제17조(교육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사람

1. ~ 6. (생략)

<신설>

③ (생략)

<신설>

제15조(교육과정에 대한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밧을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관련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여성관련시설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20조(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 여성관련시설-----

-----.

1. 이용자가 교육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생략)
3. 여성발전센터의 안전에 뚜렷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제16조(준용) 여성발전센터의 사용자,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플라자”는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신설>

제17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등) ① 제4조제4호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1. ----- 이용조건-----

2. (현행과 같음)
3. 여성관련시설-----

<삭제>

<삭제>

제5장 보칙

<삭제>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 : 별표 6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여성공예센터 : 별표 7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발전센터 :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4. 여성인력개발센터 :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의 직접적인 소요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신 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0조(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2 및 영 제34조의3과 제3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설립비 또는 운영경비 등의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생략)

제6장 사용료

제21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

<삭 제>

③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절차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제48조 및 영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
-- 제10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재정법」 -----

-----.

제12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삭 제>

<삭 제>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을 사용하
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
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여성플라자의 시설사용 : 별
표 5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2.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과정 및
부대시설 이용 : 별표 6의 범
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교육과
정 및 부대시설 이용 : 교육
과정별 직접적인 경비 및 부
대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관련시설의 수입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
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
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
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사용료
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

-- 제18조제1항제1호-----

----- 이용료-----

-----.

1. -----

----- 이용하는 -----

받은 경우(자치구는 제외한다)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다만, 숙박(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 및 보육실을 이용하는 경우 : 해당 사용료 각각 면제. 다만, 제14조제2항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게는 각각 100분의 50을 줄인

----- 이용료의 -----
----- . -----
----- 이용료의 -----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이용료의 ----- .

② ----- 제18조제1항제3호 -----

----- 이용료 -----
----- .

1. 제17조제2항 -----

----- 이용료 ----- . ----- 제17조제2항 -----

----- 50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

다.

2.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생략)

③ 삭제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 ~ 제26조 (생략)

제27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7조 및 제27조에 따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는 100분의 20--.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제21조(이용료의 반환) ---- 이용자-----

----- 이용료-----
-----.

<삭제>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 제6호-----

-----.

제26조(관리·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제10조 및 제25조-----

라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정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발급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밟을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교부결정 -----
----- 할 -----.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이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1)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운영(설치 및 운영비)

- 민간법인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서울여성공예센터 설립 및 운영(기본재산 및 운영비)

-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4.5.14.>

2. 비용추계의 전제

1) 근거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2) 기준가격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금 집행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3)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7~'21)

3. 비용추계의 결과(세출)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17)	('18)	('19)	('20)	('21)	
강동여성인력개발 센터 (세출, 보조금 지 급)	○ 초기비용 (임차보증금)	1,000,000	-	-	-	-	1,000,000
	○ 연간예산	118,520	308,841	308,841	308,841	308,841	1,353,884
	소계(b)	1,118,520	308,841	308,841	308,841	308,841	2,353,884
서울여성공예센터 (세출, 민간위탁 금 지급)	○ 초기비용 (집기구입비)	330,000	-	-	-	-	330,000
	○ 연간예산	1,775,646	2,242,000	2,242,000	2,242,000	2,242,000	10,743,646
	소계(b)	2,105,646	2,242,000	2,242,000	2,242,000	2,242,000	11,073,646
□ 총 비용		3,224,166	2,550,841	2,550,841	2,550,841	2,550,841	13,427,53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세출, 보조금 지급)		1,118,520	308,841	308,841	308,841	308,841	2,353,884
서울여성공예센터 (세출, 민간위탁금 지급)		2,105,646	2,242,000	2,242,000	2,242,000	2,242,000	11,073,646
민간							
기타							
합계		3,224,166	2,550,841	2,550,841	2,550,841	2,550,841	13,427,530

5. 덧붙이는 의견

- 1차년도('17년) 예산은 개관시기(서울여성공예센터'17.3월,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17.7월)를 고려하여 편성되었음

6. 작성자

-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고준영(2133-5029)
- 서울여성공예센터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오부자(2133-505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및 운영(설치 및 운영비)

1. 초기비용 : 임차보증금
 2. 운영비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 인 건 비 : 센터장 1명, 팀장포함 직원 4명

연도	항 목	내 역	예산금액 (천원)	산출기초
	총계		11,715,646	
2017	계		118,520	
	시설 운영	인건비	103,420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인건비(6개월분) - 기관장 1, 직원(팀장포함) 4명 이상
		사업비	10,000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6개월분)
		임차료	51,000	▶건물 월세 : 월850만원*6개월
2018	계		308,841	
	시설 운영	인건비	206,841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직원(팀장포함) 4명 이상
		사업비	20,000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임차료	102,000	▶건물 월세 : 월850만원 *12개월
2019	계		308,841	
	시설 운영	인건비	206,841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직원(팀장포함) 4명 이상
		사업비	20,000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임차료	102,000	▶건물 월세 : 월850만원 *12개월
2020	계		308,841	
	시설	인건비	206,841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인건비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 (천원)	산출기초
	운영			- 기관장 1, 직원(팀장포함) 4명 이상
		사업비	20,000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임차료	102,000	▶건물 월세 : 월850만원 *12개월
2021	계		308,841	
	시설 운영	인건비	206,841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직원(팀장포함) 4명 이상
		사업비	20,000	▶취업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임차료	102,000	▶건물 월세 : 월850만원 *12개월

2)서울여성공예센터 설립 및 운영(기본재산 및 운영비)

1. 초기비용 : 집기구입비(집기 및 장비 구입비 등)

2. 운영비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인 건 비 : 센터장 1명, 팀장 4명, 직원 9명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 (천원)	산출기초
	총계		11,715,646	
2017	계		2,105,646	
	시설 운영	인건비	502,000	▶창업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팀장급 4, 직원급 9
		사업비	535,646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운영비	1,068,000	▶건물보수 및 건물 운영 : 638백만원 ▶집기기구, 필요장비 구입 등 : 430백만원
2018	계		2,242,000	
	시설 운영	인건비	633,000	▶창업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팀장급 4, 직원급 9
		사업비	706,000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운영비	903,000	▶건물보수 및 건물 운영 : 803백만원 ▶필요장비 구입 등 : 100백만원
2019	계		2,242,000	
	시설 운영	인건비	633,000	▶창업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팀장급 4, 직원급 9
		사업비	706,000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 (천원)	산출기초
		운영비	903,000	▶건물보수 및 건물 운영 : 803백만원 ▶필요장비 구입 등 : 100백만원
	계		2,242,000	
2020	시설 운영	인건비	633,000	▶창업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팀장급 4, 직원급 9
		사업비	706,000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운영비	903,000	▶건물보수 및 건물 운영 : 803백만원 ▶필요장비 구입 등 : 100백만원
	계		2,242,000	
2021	시설 운영	인건비	633,000	▶창업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 기관장 1, 팀장급 4, 직원급 9
		사업비	706,000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홍보 등
		운영비	903,000	▶건물보수 및 건물 운영 : 803백만원 ▶필요장비 구입 등 : 100백만원